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나72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울

담당변호사 백상현, 이충윤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5. 7.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6749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0.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0. 4. 23. 접수 제3689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4. 22. 접수 제7861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443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2. 11. 위 소송 변론기일에서 ‘E은 원고에게 2011. 6. 30.까지 28,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E의 부동산 취득

E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76. 10. 30. 접수 제2442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2. 27. 접수 제122370호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및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의 유일한 재산이다.

다. E의 부동산 처분

E은 2020. 4. 2.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0. 4. 23. 접수 제3689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4. 22. 접수 제7861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E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443호 재판상 화해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이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조부모 묘가 있고, E은 피고들이 조부모의 묘를 돌보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E에게는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들도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E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북도 장수군 F 임야 25,983㎡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488㎡. 끝.

